[별지 제19호의2서식]

보세운송신고자 등록(변경) 신청서

처리기간
1일

기본정보	보세운송업자부호*	※ 등록 후 세관직원이 기재	업체명*	
	사업자등록번호*	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명*	외 ( )명	주민등록번호*	※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
	주 소*			
	본지사구분*	□본사 □지사 □단일		
	전화번호		팩스번호	
업체정보	신청구분*	□국제무역선특례업체 □화주 □관세사 □자유무역입주업체		
	화물자동차운송업 면허유무*	□예 □아니오		
	SMS 수신여부	□예 □아니오	담당자 휴대폰번호	
	이메일 수신여부	□예 □아니오	담당자 이메일	
	처리세관*		관할세관*	
	장비보유현황 및 수출물품 운송 특송업체 집하차량 현황*	1. 화물 자동차 ( )대 2. 특수 자동차 ( )대 3. 선박 ( )대 4. 항공기 ( )대 5. 특송업체 집하차량 ( )대		

「관세법」 제214조 및 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2조, 제24조, 제38조에 따라 보세운송신고자 등록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0 0 세 관 장 귀 하

위와 같이 등록합니다.

20 년 월 일

○ ○ 세관장 직인

첨부서류	신청인 제출서류	보유장비 명세서 및 보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등록원부(갑) ※ 특송업체 집하차량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차량 명세
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) ※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.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및 제38조,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'담당 공무원 확인사항'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